

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류호정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546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11. 16.

발 의 자 : 류호정 · 이수잔^배 · 강성희
용혜인 · 김주영 · 배진교
이은주 · 강은미 · 장혜영
심상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시·도지사는 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재돌봄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재돌봄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함)로 지정할 수 있으며,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센터 종사 근로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센터의 장이 「근로기준법」 등 노동관계법률을 위반하여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도 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센터의 장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「근로기준법」,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, 「최저임금법」,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또는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

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시·도지사가 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센터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80조의5제2항제3호 신설).

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0조의5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장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「근로기준법」,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, 「최저임금법」,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또는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) 제80조의5제2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장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「근로기준법」,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, 「최저임금법」,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또는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0조의5(지역문화재돌봄센터)	제80조의5(지역문화재돌봄센터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·도지사는 지역문화재돌 봄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 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을 취소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.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3. <u>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장</u> <u>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「근</u> <u>로기준법」, 「노동조합 및</u> <u>노동관계조정법」, 「최저임</u> <u>금법」, 「산업안전보건법」</u> <u>또는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</u> <u>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벌금</u> <u>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</u> <u>형이 확정된 경우</u>
③ · ④ (생 략)	③ · ④ (현행과 같음)